

# 적격심사 세부기준

□ 제정 : 2018. 12. 7.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이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에 해당하는 용역계약 중 제2조의 일반용역 계약 또는 그에 준하는 용역 계약에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른 일반용역계약은 개별 입찰공고에서 제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에게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적격심사 신청서(본 대학 소정양식) 1부.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본 대학 소정양식) 1부.
3.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본 대학 소정양식) 1부.
4.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본 대학 소정양식) 1부.
5. 기타 제출서류 1부.

③ 제출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오류가 있어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4-2-41 적격심사 규정

④ 제4항에 따라 보완 요청한 심사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심사서류 보완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 적격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적격심사 기준에 따른다.

**제5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이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의 적격심사에 따른 기간계산 등의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나. 납품이행능력의 결격여부에 대하여는 낙찰자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6조(평가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한다.

②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납품실적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적격심사 시 적용할 납품실적 평가기준(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물품, 금액 또는 수량)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납품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 물품을 납품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수량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납품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른다.

**제7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제6조에 따른다. 다만, 면허 보안을 위한 전기·정보통신공사 등 공사업을 분담 이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업 분담이행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수급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 납품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납품실적(금액 또는 수량)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한다.

②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한다

**제9조(낙찰자 결정)** ①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제8조제2항에 따라 결격 구성원을 포함한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공동수급 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재심사)** ①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4-2-41 적격심사 규정

-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결과는 재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1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기타사항)** ① 이 심사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를 적용하며,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적용한다.

■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I. 해당용역 수행능력 및 사회적 의무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10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0
	3.사회적의무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 여부	5
	계		35
II.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여부	5
III.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합 계			100
IV.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
<p>①입찰가격 평점산식</p> $\circ \text{평점(점)} = \text{배점한도} - 5 \times \left  \left( \frac{91}{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p>(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4%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4%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는 절대값 표시임.</li> <li>-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li> <li>-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li> </ul> <p>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이행실적은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분할실적 포함) 한하여 인정하며,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의 청소용역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p> <p>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p> <p>④신인도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p> <p>⑤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p>			

4-2-41 적격심사 규정

1.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평점	비 고
해당용역 규모 대비 최근5년간 용역이행 실적비율 [금액 기준]	가.동등 이상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 ~ 100%미만 C. 40%이상 ~ 70%미만 D. 10%이상 ~ 40%미만	10 9 8 7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분야이거나 그 이상의 분 야가 포함된 용역이행실적
	나.유사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 ~ 100%미만 C. 40%이상 ~ 70%미만 D. 10%이상 ~ 40%미만	3 2 1 0.5	

※[주]

가. 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이행실적의 평가는 “가” 항과 “나” 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배점한도별
			20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5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0

4-2-41 적격심사 규정

3. 사회적의무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점수(배점한도)		비 고
	가입	미가입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 여부	5	0	

4.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점수(배점한도)		비 고
	제출시	미제출시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③ 근로기준법 및 최저 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한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청소용역)	5	0	
계	5	0	

## 적격심사 신청서

- 공고번호 :
- 심사대상용역명 :
- 수요기관 :
- 입찰일시 :

위 건 일반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 .

심사대상입찰자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 붙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일반용역 이행실적증명서 1부
3.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시설분야용역인 경우) 1부
4. 기타 첨부서류

## 수원과학대학교 총장 귀하

---

### 접수증

- 1. 구매관리번호 :
- 2. 용역명 :
- 3. 수요기관 :
- 4. 제출자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 .

수원과학대학교 업무과장

(인)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관리번호	
입찰일시	
용역명	
용역기간	
수요기관	
입찰금액	
예정가격	
제출기한	

2. 심사대상입찰자

회사명	(전화)
대표자	
업종구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해당용역 수행능력 및 사회적의무	이행실적	해당용역	10	
		유사용역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0	
	사회적의무	퇴직연금 가입	5	
<b>소 계</b>		<b>35</b>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5		
입찰 가격		60		
<b>합 계</b>		<b>65</b>		
결격 사유		△20		
<b>총 평점</b>		<b>100</b>		